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581호, 2024.12.20. 공포)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경우의 면제 범위를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로 변경(안 제9조의9 수정)
 -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에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만 제시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입법예고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(2025. 4. . ~ 5 .)

3) 행정규제 : 신설 및 강화 규제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”를
“국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9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</u> 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. 1. ~ 16. (생략) ③ (생략)	제9조의9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 <u>국가</u> -----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	
연락처	(042) 481 - 4211